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6 ~ 19
----------	-----------

제출연월일	2006. 4. 12.
제 출 자	거 창 군 수

1. 개정이유

-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화물적재면적 2㎡미만인 화물자동차의 승용자동차로 분류 기준이 변경되는 자동차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면제 대상 승용자동차에 포함되도록 하고,
-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임대주택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화물적재면적 2㎡미만(무쏘 픽업, 코란도 밴 등) 자동차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면제대상 승용자동차에 포함(안 제2조 및 제3조).
- 나.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의1).
- 다. 임대주택 감면 및 추징에 따른 인용조문을 명확히 함(안 제11조).
- 라. 터미널용 토지 50%감면 조항을 삭제(안 제15조 및 제21조).
- 마.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 명확히 함(안 제16조).
-토지 및 지상건축물→토지·지상건축물·주택
- 바. 외국인투자 감면대상 중 외국인투자지역 및 기업도시개발구역을 추가(안 제23조).
- 사. 법인이 지방으로 이전 시 감면대상재산의 취득기한('05. 12. 31)을 삭제(안 제25조).

3. 참고자료

- 가. 관계법규 :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임대주택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표준안 시달 : 도 세정과-11197(2005. 12.21), 도 세정과-1595(2006. 2. 14)
- 나. 예산조치 : 없음
- 다. 기 타
 - (1)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2)입법예고(2006. 2. 28 ~ 3. 19)결과 : 의견제출없음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제5조의1(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1(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11조제1항 및 동조제2항 단서중 “「임대주택법」 제12조”를 각각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제1호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2항중 “토지 및 지상 건축물”을 “토지·지상 건축물·주택”으로 한다.

제21조중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를 “창고용에”로 한다.

제23조제1호 및 제2호중 “같은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를 “같은조제1항제2호의2 내지 제2호의7”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2005년12월31일까지 취득하는”을 “취득하는”으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시한) 제5조의1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①(생략) ②(생략) 1.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2~4. (생략) ③(생략)</p> <p>제3조(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생략) 1.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p>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12월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12월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4. (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p> <p>제3조(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p>

현 행	개 정 안
<p>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2.~4. (생 략) ②(생 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p>	<p>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12월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12월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p> <p>2.~4. (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p> <p>제5조의1(지방의료원에 대한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한다.</p> <p>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p> <p>----- ----- ----- ----- ----- -----</p>
현 행	개 정 안

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 의무기간 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생략)

「임대주택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

1. -----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2.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p>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p>	<p>----- ----- -----</p>
<p>2. (생략) 제15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 ----- ----- ----- 2. (현행과 같음) 제15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한 감면) <u><삭 제></u></p>
<p>제16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①(생략)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 건축물(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p>	<p>제16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①(현행과 같음) ②----- ----- ----- ----- -----<u>토지·지상 건축물·주택</u>----- ----- -----</p>
<p>제21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p>	<p>제21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 ----- ----- ----- -----<u>창고용에</u>----- ----- -----</p>

현 행	개 정 안
<p>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제23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생략)</p> <p>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u>같은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u>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u>같은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u>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p>	<p>-----.</p> <p>제23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현행과 같음)</p> <p>1. ----- ----- ----- ----- ----- ----- ----- <u>같은조제1항제2호의2 내지 제2호의7</u> ----- ----- ----- ----- -----</p> <p>2. ----- ----- ----- ----- ----- ----- ----- <u>같은조제1항제2호의2 내지 제2호의7</u> ----- -----</p>

현 행	개 정 안
<p>인 투자비용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3.~4. (생략)</p> <p>제25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u>2005년12월31일까지 취득하는</u>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이 해산한 때(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p> <p>1.·2. (생략) ②(생략)</p>	<p>-----</p> <p>-----</p> <p>-----</p> <p>-----</p> <p>-----.</p> <p>3.~4. (현행과 같음)</p> <p>제25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① -----</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취득하는</p> <p>-----</p> <p>-----</p> <p>-----</p> <p>-----</p> <p>-----</p> <p>-----.</p> <p>1.·2. (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p>